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협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바, 원산지증명서 및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 관련 규정 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개정 사유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관세법 규칙”)

##### 개정(3.22. 공포)에 따른 고시 정비

-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신설\*
  - \* 지침으로 운영중인 관련 규정을 FTA관세법 규칙 및 고시로 상향입법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
  - \*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략(예: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신청사유서’ (재발급·정정발급 시) 및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 시) 제출 생략

####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발굴 및 지정\*\*

- \* C/O발급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물품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정 가능)
- \*\* 전통주(청주, 탁주) 및 섬유류 등 RCEP(일본) 수출 상위품목 중 FTA활용 실익이 있는 9개 품목

####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

- 증명서발급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및 범칙조사의뢰 절차 정비
- 원산지 등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

####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 \* 사전통지, 연기신청 외 의견제출, 조사원 교체신청 등 고시 미반영사항 준용규정 신설

## II. 주요 개정내용

### 1. FTA관세법 규칙 개정(§10의2)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

-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등 신설(§26⑦·⑧)
  - 수입신고필증 외 수입·수출 물품 간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 규정
    - \*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수입 시 국제운송서류
  - RCEP 협정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규정
    - \* 양수도계약서, \*\*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구입명세서 등
-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26④)
  - 증명서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의 경우 제출 생략\*
    - \* (현행) C/O 발급 신청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제출  
→ (개선) 발급기관에서 전산조회, 인증서 사본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절차 간소화 등(§34·§35)
  - ‘신청사유서’ 제출을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에 직접 기재토록 양식 개정\*
    - \* 별도 양식 없이 기업의 공문으로 제출하던 사유서 제출을 생략
    - \*\*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도난, 훼손 등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신청사유란 신설
  -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생략하여 기업의 편의 제공

###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발굴 및 지정 등(별표2의2)

- 전통주(청주탁주) 및 인조섬유 티셔츠 등 FTA 활용 실익이 높은 9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
  - \* 원산지간이확인물품: [개정 前] 317개 품목 → [개정 後] 326개 품목
-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하여 법령용어 정비\*
  - \* (HSK 8481.80.2000(탭코크와 트랩)) 유로의 개폐나 → 유로를 여닫거나

###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

- 증명서발급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및 범칙조사의뢰 절차 정비(§24)
  - 신청서류의 보정요구 시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 사유 정비
  -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 외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범칙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등
- 원산지 등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50)
  -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 사유 정비

####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 현지확인 연기신청 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여 통보 (§29③)
- 현지확인을 위한 사전통지, 연기신청 이외에 의견제출, 조사원 교체신청 등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상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 (§29⑤)

#### 5. 조문 및 법령용어 정비

- (조문정비)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 정비

고시 조항	개정내용
§34①(재발급 관련)	규칙 제10조제8항(서류보완 관련) → 제9항(정정, 재발급 관련)
§37①(전자발급 관련)	규칙 제10조제10항(재발급, 정정발급 관련) → 제11항(전자문서방식 관련)
§34①·§35①제1호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발급(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 (법령용어) 부적절, 문맥의 명확한 해석을 위한 용어 정비

고시 조항	개정내용
§24②(조사의뢰 관련)	고의 또는 허위로 →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35①3호(정정발급 관련)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35④(정정발급 관련)	원산지증명서 대체하여 재발급 → 원산지증명서 대체하여 발급

### III. 시행일자

1. 시행일자 : 2024. 04. 04.
2. 규제대상 여부: “해당 없음”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개정요약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붙임 2] (신구조문대조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붙임 3] (전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I Contact



차재영 관세사 / Director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최의웅 팀장 / Asso.

T 070-4353-1535  
E ewchoi@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